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2호 2021. 7. 21.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9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정정).....1
- 정선군 고시 제2021-9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21-94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9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848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도로:소로1-8호) 공사 완료 공고40

- 정선군 공고 제2021-899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41
- 정선군 공고 제2021-900호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58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1-8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6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1-9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7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9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정정)

1. 정선군고시 제2021-46호(2021. 4. 16)로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조서상 기재착오 사항(건축연면적 등)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사항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및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기 조성된 종합운동장 내 골프연습장 조성을 통해 골프 종목의 저변 확대 등 지역내 부족한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다. 규 모 : 운동장 A=177,698.4m²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도시과 비치)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변경없음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운동장	종합운동장	애산리 768일원	177,698.4	-	177,698.4	강원도고시 제2008-218호 ('08.8.8)	-

다.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77,698.4	-	177,698.4	100.0	
운 동 시 설	-	70,201.0	증)7,794.0	77,995.0	44.0	
주 경 기 장	1-1	30,570.0	-	30,570.0	17.2	
보조 경기장	1-2	15,590.0	-	15,590.0	8.8	
실내체육관	1-3	5,320.0	-	5,320.0	3.0	
궁도장	1-4	5,990.0	-	5,990.0	3.4	
테니스장	1-5	7,117.0	-	7,117.0	4.0	
농구장	1-6	3,410.0	-	3,410.0	1.9	
실내야구연습장	1-7	1,185.0	-	1,185.0	0.7	
태권도연습장	1-8	1,019.0	-	1,019.0	0.6	
골프연습장	1-9	-	증)7,794.0	7,794.0	4.4	금회 신설
편 의 시 설	-	17,270.0	-	17,270.0	9.7	
주차장①	2-1	9,810.0	-	9,810.0	5.5	
주차장②	2-2	6,940.0	-	6,940.0	3.9	
주차장③	2-3	520.0	-	520.0	0.3	
광장 및 조경시설	-	74,727.4	감)7,794.0	66,933.4	37.6	
광장①	3-1	1,960.0	-	1,960.0	1.1	
광장②	3-2	2,370.0	-	2,370.0	1.3	
광장③	3-3	5,230.0	-	5,230.0	2.9	
녹지 및 기타	3-4	65,167.4	감)7,794.0	57,167.4	32.3	
교 통 시 설	-	15,500.0	-	15,500.0	8.7	
도 로	4	15,500.0	-	15,500.0	8.7	

2)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7,698.4	-	177,698.4	16,060.01	증) 637.19	16,697.20	24,529.71	증) 1,748.14	26,277.85	
소		계	70,201.0	증) 7,794	77,995.0	16,010.31	증) 637.19	16,647.50	24,462.47	증) 1,748.14	26,210.61	
운 동 시 설	1-1	주경기장	30,570.0	-	30,570.0	8,810.97	-	8,810.97	13,494.42	-	13,494.42	
	1-2	보조 경기장	15,590.0	-	15,590.0	607.50	-	607.50	721.82	-	721.82	
	1-3	실내 체육관	5,320.0	-	5,320.0	4,910.26	-	4,910.26	8,003.33	-	8,003.33	
	1-4	공도장	5,990.0	-	5,990.0	402.55	-	402.55	476.26	-	476.26	
	1-5	테니스장	7,117.0	-	7,117.0	499.77	-	499.77	987.38	-	987.38	
	1-6	농구장	3,410.0	-	3,410.0	102.06	-	102.06	102.06	-	102.06	
	1-7	실내야구연 습장	1,185.0	-	1,185.0	299.20	-	299.20	299.20	-	299.20	
	1-8	태권도 연습장	1,019.0	-	1,019.0	378.00	-	378.00	378.00	-	378.00	
	1-9	골프 연습장	-	증) 7,794	7,794.0	-	증) 637.19	637.19	-	증) 1,748.14	1,748.14	금회 신설
소		계	17,270.0	-	17,270.0	-	-	-	-	-	-	
편 의 시 설	2-1	주차장①	9,810.0	-	9,810.0	-	-	-	-	-	-	
	2-2	주차장②	6,940.0	-	6,940.0	-	-	-	-	-	-	
	2-3	주차장③	520.0	-	520.0	-	-	-	-	-	-	
소		계	74,727.4	감) 7,794.0	66,933.4	49.70	-	49.70	67.24	-	67.24	
광 장 및 조 경 시 설	3-1	광장①	1,960.0	-	1,960.0	-	-	-	-	-	-	
	3-2	광장②	2,370.0	-	2,370.0	-	-	-	-	-	-	
	3-3	광장③	5,230.0	-	5,230.0	-	-	-	-	-	-	
	3-4	녹지 및 기타	65,167.4	감) 7,794.0	57,373.4	49.70	-	49.70	67.24	-	67.24	
소		계	15,500.0	-	15,500.0	-	-	-	-	-	-	
교 통 시 설	4	도로	15,500.0	-	15,500.0	-	-	-	-	-	-	

■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골프 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부지면적 : 7,794.0m² - 건축면적 : 637.19m² - 건축연면적 : <u>1,748.14m²</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운동장 내 유휴지를 활용한 골프연습장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골프종목의 저변 확대 및 군민과 주변지역의 생활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제공
3-4	녹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 부지면적 : 65,167.4m² → 57,373.4m² 감)7,794.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운동장 내 골프연습장 신설로 인한 부지면적 감소

정선군 고시 제2021-9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북평면 북평4지구 및 장열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완료에 따라 군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나. 위 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장열리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금회 변경사항)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기정	3	1,512	10,550	1	721	6,126	-	-	-	2	791	4,424
	변경	6	1,819	12,438	1	721	5,634	-	-	-	5	1,096	6,804
소로	기정	3	1,512	10,550	1	721	6,126	-	-	-	2	791	4,424
	변경	6	1,819	12,438	1	721	5,634	-	-	-	5	1,096	6,804

※ 신설 3개소, 변경 3개소

2)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6.5~10	집산 도로	721	중로 1-2 장열리 43-2도	장열리 365구	일반 도로	장열 대교	강고67호 (86.6.7)	
변경	소로	1	1	6.5~10	집산 도로	721	중로 1-2 장열리 43-2도	장열리 366도	일반 도로	장열 대교	강고67호 (86.6.7)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3	6.5	국지 도로	420	소로 1-1 장열리 366도	장열리 366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변경	소로	3	23	6.5	국지 도로	422	소로 1-1 장열리 366도	장열리 366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371	소로 3-17 장열리 448대	소로 1-6 장열리 366도	일반 도로	-	강고67호 (86.6.7)	
변경	소로	3	18	5~6	국지 도로	255	소로3-24 장열리 448대	소로 1-1 장열리 369답	일반 도로	-	강고67호 (86.6.7)	노선분리
신설	소로	3	24	6	국지 도로	107	소로3-23 장열리 452답	장열리 366도	일반 도로	-	금 회	노선분리
신설	소로	3	25	6	국지 도로	195	중로1-2 북평리 63-64도	북평리 63-2체	일반 도로	북평 초교	금 회	
신설	소로	3	26	5	국지 도로	119	중로2-2 북평리 665-7도	중로2-4 북평리 686-12도	일반 도로	-	금 회	

3)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 1-1	소로 1-1	◦선형변경 -B=6.5~10m, L=721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북평4지구, 장열지구)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소로 3-23	소로 3-23	◦선형변경 -B=6.5m, -L=420m→422m, 증)2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북평4지구, 장열지구)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 및 연장변경
변경	소로 3-18	소로 3-18	◦노선분리 및 선형변경 -B=6m→5~6m, -L=371m→255m, 감)116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북평4지구, 장열지구) 완료에 따라 현황도로에 맞추어 노선분리 및 선형변경
신설	-	소로 3-24	◦노선분리 -B=6m, L=107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북평4지구, 장열지구) 완료 및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노선분리
신설	-	소로 3-25	◦도로신설 -B=6m, L=195m	◦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도로 신설
신설	-	소로 3-26	◦도로신설 -B=5m, L=119m	◦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도로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북평4	어린이공원	북평면 북평리 산189-15번지 일원	1,660	증) 107	1,767	정고제42호 (03.5.9)	-

2)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⑤	북평4 어린이공원	· 면적변경 - A =1,660m ² →1,767m ² , 증) 107m ²	· 북평면지적재조사사업(북평4지구, 장열지구) 완료에 따른 공원구역변경 및 당초 구적면적 정정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북평취수장	북평면 장열리 194-7번지 일원	2,870	증) 15	2,885	정고제96호 (10.7.9)	-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①	북평취수장	· 면적변경 - A =2,870m ² →2,885m ² , 증) 15m ²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북평4지구, 장열지구) 완료에 따른 취수장 면적 변경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북평 초등학교	초등학교	북평면 북평리 63-1번지 일원	14,270	감) 180	14,090	강고제67호 (86.6.7)	

2)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①	북평초등학교	· 면적변경 - A=14,270m ² →14,090m ² , 감)180m ²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북평4지구, 장열지구) 완료에 따른 학교 면적 변경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실음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군 고시 제2021-94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실효사항 현실화 반영과 높이(층수)를 상향하여 계획적 개발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다. 위 치:

- 1) 고한1지구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 2) 고한2-1지구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5-1번지 일원
- 3) 고한2-2지구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번지 일원
- 4) 고한2-3지구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6-1번지 일원
- 5) 고한2-4지구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14번지 일원
- 6) 고한3지구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5-4번지 일원

라. 면 적:

- 1) 고한1지구 : 19,342㎡(변경없음)
- 2) 고한2-1지구 : 51,894㎡(변경없음)
- 3) 고한2-2지구 : 62,250㎡(변경없음)

- 4) 고한2-3지구 : 51,933m²(변경없음)
- 5) 고한2-4지구 : 48,709m²(변경없음)
- 6) 고한3지구 : 49,900m²(변경없음)

마.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정선군 도시과 비치)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52-1전 일원	19,342	-	19,342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②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35-1전 일원	51,894	-	51,894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③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25-4대 일원	62,250	-	62,250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④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06-1대 일원	51,933	-	51,933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⑤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62-14대 일원	48,709	-	48,709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⑥	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65-4대 일원	49,900	-	49,900	강고 제83호 (02.4.15)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합계	284,028	66,940	9,547	201,214	6,327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19,342	-	-	19,342	-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51,894	-	-	51,894	-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62,250	17,040	9,547	35,663	-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51,933	-	-	51,933	-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48,709	-	-	42,382	6,327
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49,900	49,900	-	-	-

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2	304	1	91	1	213	-	-
중로	1	213	-	-	1	213	-	-
소로	1	91	1	91	-	-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8	15	보조 간선도로	213	3호 광장 고한리 149-2도	고한리 273천	일반 도로	고한사북 버스터미널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2,712 (91)	중로 2-8 고한리 273천	고한구역계 고한리 237대	일반 도로	종합 운동장	정선고 제25호 (16.4.15)	

* ()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나. 자동차정류장

1)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고한읍 고한리 273-12천 일원	5,043	-	5,043	강고 제300호 (03.12.13)	

2.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2	491	2	491	-	-	-	-
소로	2	491	2	491	-	-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	9~10	집산 도로	409	고한리 136-29도	소로 1-18 고한리 산89-1천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 제26호 (79.2.8)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114 (82)	소로 2-30 고한리 1410-6대	소로 1-13 고한리 산274-4	일반 도로	선데일 콘도	강고 제51호 (05.3.25)	

* ()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3.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9	1,178	2	164	3	738	4	276
대로	1	46	-	-	-	-	1	46
중로	1	648	-	-	1	648	-	-
소로	7	484	2	164	2	90	3	230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71 (46)	구역계 고한리 124-4첵	중로 2-7 고한리 124-9대	일반 도로	고한남부 장로교회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중로	2	7	16	보조간선 도로	1,953 (648)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 제294호 (73.7.12)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125	대로 3-2 고한리 121-24도	소로 2-28 고한리 산297-57입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9	중로 3-8 고한리 120-92도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7	중로 2-7 고한리 125-10대	5호 광장 고한리 125-11대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정선고 제96호 (10.7.9)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63	소로 1-13 고한리 산297-57도	중로 2-7 고한리 274-276도	일반 도로	사북택시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65 (20)	소로 2-27 고한리 274-36대	수질오염방지시설 고한리 274-299전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9호 (02.5.16)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52	소로 1-11 고한리 274-110도	5호 광장 고한리 274-196대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5호 (16.4.19)	
기정	소로	3	41	4	국지 도로	79 (58)	중로 2-7 고한리 104-2도	소로 3-22 고한리 274-36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 ()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4.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9	1,341	1	53	4	933	4	355
중로	2	691	-	-	1	663	1	28
소로	7	650	1	53	3	270	3	327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	16	보조간선 도로	1,953 (663)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 제294호 (73.7.12)	
기정	중로	3	14	12	집산 도로	291 (28)	중로 2-7 고한리 88-2도	고한리 84-8잡	일반 도로	고한읍 사무소	강고 제228호 (10.7.23)	
기정	소로	1	12	6~10	국지 도로	100 (53)	중로 2-7 고한리 62-6도	학교7 고한리 74학	일반 도로	고한교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5	5~8	국지 도로	195	소로 1-12 고한리 96-60도	소로 2-26 고한리 88-1도	일반 도로	고한 우체국	강고 제26호 (79.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48	중로 2-7 고한리 94-8도	소로 2-25 고한리 91-21도	일반 도로	제일 감리교회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27	중로 2-7 고한리 104-75도	소로 3-39 고한리 91-37대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7호 (19.2.15)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65 (20)	소로 2-27 고한리 274-36대	수질오염방지시설 고한리 274-299전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9호 (02.5.16)	
기정	소로	3	39	6	국지 도로	228	소로 2-25 고한리 274-36대	중로 2-7 고한리 87-2도	일반 도로	고한 파출소	정선고 제25호 (16.4.15)	
기정	소로	3	41	4	국지 도로	79	중로 2-7 고한리 104-2도	소로 3-22 고한리 274-36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 ()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2,189	-	2,189	-	
기정	⑥	고한역전1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96-91차 일원	1,277	-	1,277	강고 제207호 (98.10.15)	
기정	⑰	고한18리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91-36대 일원	912	-	912	정선고 제96호 (10.7.9)	

5.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8	1,419	2	71	3	856	3	492
중로	2	660	1	18	1	642	-	-
소로	6	759	1	53	2	214	3	492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	20	국지 도로	61 (18)	중로 2-7 고한리 274-14대	중로 3-8 고한리 66-20대	일반 도로	엘리트 학원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중로	2	7	16	보조간선 도로	1,953 (642)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 제294호 (73.7.12)	
기정	소로	1	12	6~10	국지 도로	100 (53)	중로 2-7 고한리 62-6도	학교7 고한리 74학	일반 도로	고한교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167	소로 2-24 고한리 62-405도	중로 2-7 고한리 97-1대	일반 도로	고한농협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47	중로 2-7 고한리 98-9철	소로 2-23 고한리 62-394대	일반 도로	고한농협	정선고 제96호 (10.7.9)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74 (31)	중로 2-7 고한리 97-4철	고한역 고한리 97-55철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9호 (02.5.16)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54	소로 2-23 공나리 97-24대	소로 2-24 고한리 62-278도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3	40	7	국지 도로	407	소로 1-12 고한리 96-60도	중로 1-4 고한리 274-14대	일반 도로	-	강고 제300호 (03.12.13)	

※ ()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7,843	-	7,843	-	
기정	⑩	고한 역전2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274-64도 일원	7,843	-	7,843	정선고 제29호 (02.5.16)	

6. 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6	1,130	3	547	2	443	1	140
중로	1	140	-	-	-	-	1	140
소로	5	990	3	547	2	443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8	12	보조간 선도로	582 (140)	8호 광장 고한리 47-1도	소로 1-11 고한리 산260-11입	일반 도로	-	강고 제294호 (73.7.12)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263	소로 1-10 고한리 65-4대	소로 1-11 고한리 260-9입	일반 도로	한국전력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236	소로 2-15 고한리 63-40입	소로 2-17 고한리 65-15대	일반 도로	동원 복지회	강고 제26호 (79.2.8)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710 (48)	중로 3-8 고한리 산260-7도	학교 7 고한리 80-39학	일반 도로	고한 중고교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82	소로 3-16 고한리 63대	소로 1-9 고한리 63대	일반 도로	고한APT	강고 제26호 (79.2.8)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489 (361)	소로 3-14 고한리 산2-265입	소로 1-7 고한리 산260-9입	일반 도로	고한 어린이집	강고 제2577호 (73.12.26)	

* ()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중로2-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사북읍 사북리 344-153종 일원	25,495	-	25,495	강고 제83호 (02.4.15)

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없음

가. 단위대지 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 거 지 역	◦최소개발규모 : 60㎡, 최대개발규모 : 1,000㎡	
	상 업 지 역	◦최소개발규모 : 150㎡, 최대개발규모 : 2,000㎡	
	공 동 건 축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나. 공동건축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동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일부 맹지형 필지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여러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다. 대지분할가능선

구분	대지분할가능선	비고
기정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 위치 지정	

2.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15,894	-	15,894	-	-
기정	A1	10,851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10,851	-	-
기정	A2	5,043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5,043	-	-

2)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40,853	-	46,389	증)5,536	-
변경	B1	16,128	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일원	15,884	감)244	· 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
변경	B2	15,356	고한읍 고한리 136-20번지 일원	17,443	증)2,087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B3	9,369	고한읍 고한리 128-2번지 일원	13,062	증)3,693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45,644	-	46,374	증)730	-
변경	C1	9,205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11,081	증)1,876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C2	5,558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5,547	감)11	· 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
변경	C3	600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577	감)23	· 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
변경	C4	4,930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4,400	감)530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C5	3,740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3,626	감)114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C6	16,61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16,011	감)607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C7	2,956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2,844	감)112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C8	2,037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2,288	증)251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33,519	-	35,681	증)2,162	-
변경	D1	8,752	고한읍 고한리 106-1번지 일원	17,101	증)8,347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폐지	D2	6,302	고한읍 고한리 85-3번지 일원	-	감)6,302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D1과 합병
기정	D3	2,272	고한읍 고한리 88-5번지 일원	2,272	-	-
기정	D4	912	고한읍 고한리 88-16번지 일원	912	-	-
변경	D5	2,804	고한읍 고한리 91-25번지 일원	2,806	증)2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D6	3,035	고한읍 고한리 94-1번지 일원	3,029	감)6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D7	8,165	고한읍 고한리 96-57번지 일원	8,284	증)119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기정	D8	1,277	고한읍 고한리 96-76번지 일원	1,277	-	-

5)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30,089	-	30,854	증)765	-
변경	E1	12,150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12,163	증)13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기정	E2	795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795	-	-
변경	E3	3,073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3,203	증)130	· 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
기정	E4	3,088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3,088	-	-

(표계속)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변경	E5	1,480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1,361	감)119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기정	E6	7,843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7,843	-	-
변경	E7	770	고한읍 고한리 274-226번지 일원	1,511	증)741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고 시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기정	E8	890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890	-	-

6) 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36,061	-	36,061	-	-
기정	F1	12,640	고한읍 고한리 66-38번지 일원	12,640	-	-
기정	F2	4,940	고한읍 고한리 65-4번지 일원	4,940	-	-
기정	F3	4,091	고한읍 고한리 65-12번지 일원	4,091	-	-
기정	F4	14,390	고한읍 고한리 65-10번지 일원	14,390	-	-

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불허용도(변경)

구분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1 일반 상업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u>창고시설(100㎡이상)</u>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재 관련업종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등)
2 고한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u>창고시설(100㎡이상)</u>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상 동
3 일반 주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u>창고시설(100㎡이상)</u>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상 동

나.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고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락시설	◦전층 권장용도
B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전층 권장용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1층 권장용도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시장 - 상점 	◦전층 권장용도
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	◦전층 권장용도

다. 건폐율

구분	건폐율	비고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준주거지역	70% 이하	(구) 고한초교 주변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라. 용적률

1) 용적률 계획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중심지 형성지역	400 ~ 500	500 ~ 600	고한시장 및 고한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300 ~ 400	350 ~ 550	-
주거지역	150 ~ 300	200 ~ 350	(구) 고한초교 주변

2) 용적률 완화적용(Incentive)에 관한 계획

구분		완화기준	비고
허용용적률	공동건축	규제사항	◦30%
		권장사항	◦40%
	경사지붕의 처리		◦20%
	경사지붕색채		◦10%
	건축한계선		◦(조성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전층권장용도		◦(권장용도 누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1층권장용도		◦(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공개공지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전면공지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공동주차장 조성		◦기준용적률×0.1
상한용적률		◦시행지침 제11조 4항 참조	

주 : '경사지붕의 처리' 와 관련한 완화기준은 시행지침 제32조에 의한 경사지붕처리 조항의 ①항 권장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마. 높이(변경)

구분	최고높이		비고
	기정	변경	
중심지 형성지역	8층 ~ 12층 이하	12층 이하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높이(층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경 ※ 단, 고한3지구 F4블록은 15층 이하로 유지
기타 상업지역	8층 ~ 10층 이하		
주거지역	4층 ~ 7층 이하		

바. 배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2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변경	A1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용 도	◦ 불허용도 2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A2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용 도	◦ 불허용도 2(여객자동차정류장)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50% 허용 : 300%	
			높 이	◦ 6층(21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변경	A2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용 도	◦ 불허용도 2(여객자동차정류장)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50% 허용 : 300%	
			높 이	◦ 12층(42m)이하	
기정	A2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용 도	◦ 불허용도 2(여객자동차정류장)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50% 허용 : 300%	

2)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B1	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50%	
			용적률	◦ 기준(허용) : 400%	
			높 이	◦ 12층(4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B3	고한읍 고한리 136-2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변경	B3	고한읍 고한리 136-2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정	B4	고한읍 고한리 128-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변경	B4	고한읍 고한리 128-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3)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8층(28m)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8층(28m)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표계속)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8층(28m)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표계속)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 권장용도 E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변경	◦ 70%	
			용적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7층(24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70%	
			용적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표계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70%	
			용적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7층(24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변경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70%	
			용적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4)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D1	고한읍 고한리 106-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변경	D1	고한읍 고한리 106-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표계속)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폐지	D2	고한읍 고한리 85-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D1과 합병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정	D3	고한읍 고한리 88-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D3	고한읍 고한리 88-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D4	고한읍 고한리 88-16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표계속)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D5	고한읍 고한리 91-2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D5	고한읍 고한리 91-2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D6	고한읍 고한리 9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D6	고한읍 고한리 9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표계속)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D7	고한읍 고한리 96-5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변경	D7	고한읍 고한리 96-5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D	
			변경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정	D8	고한읍 고한리 96-76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대상지 좌측에서 2m	

5)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E1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500% 허용 : 500%~600%	
			높 이	◦ 8층(28m)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E1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500% 허용 : 500%~600%	조서 오류정정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E2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변경	E2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표계속)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E3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500% 허용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E4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500% 허용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E5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6층(21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E5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표계속)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E6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E7	고한읍 고한리 274-226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E8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3) 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F1	고한읍 고한리 66-3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정	F2	고한읍 고한리 65-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F3	고한읍 고한리 65-1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F4	고한읍 고한리 65-10번지 일원	용 도	◦ 아파트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5층(53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⑥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 : 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위치 및 조성 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대형필지

나. 경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벽처리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옥외광고물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지주형 간편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판류형 간편은 원색사용 지양	
색채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1층부 형태	◦개구부 통일성 유지 ◦투시형 서터 권장	
조명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경사형 지붕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 - 주거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 - 상업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 - 공공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재 :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공동주차 출입구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보차혼용통로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A2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2)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B1	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 주차입구 전면부로 위치변경, 면적 : 890m² ◦ 주차출입구 : 대상지의 전면부에 8m와 15m 폭원지정 - 차량흐름을 최대한 고려 ◦ 보행주출입구 : 전면부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보행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조성 ◦ 차량동선 : 이동 및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지정 ◦ 보행동선 : 차량의 이동과 분리,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지정 	
기정	B3	고한읍 고한리 136-20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B4	고한읍 고한리 128-2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도면 참고
변경			◦ 보차혼용통로(B=4m) ※ 장기미집행 노선실효에 따라 보차혼용통로 일부 조정	

3)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2m)	도면 참고
변경			◦ 보차혼용통로(B=4m) ※ 장기미집행 노선실효에 따라 보차혼용통로 일부 조정	
기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표계속)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도면 참고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도면 불일치 오류사항 정정	
기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도면 참고
변경			◦ 보차혼용통로(B=2m) ※ 도면 불일치 오류사항 정정	

4)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D1	고한읍 고한리 106-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2m)	도면 참고
변경			◦ 보차혼용통로(B=4m, 3m, 2m) ※ 장기미집행 노선실효에 따라 보차혼용통로 일부 조정 및 신설	
기정	D2	고한읍 고한리 85-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2m)	도면 참고
변경	D1		◦ 보차혼용통로(B=4m, 3m, 2m) ※ 장기미집행 노선실효에 따라 D1블록과 병합	
기정	D3	고한읍 고한리 88-5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D4	고한읍 고한리 88-1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D5	고한읍 고한리 91-25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기정	D6	고한읍 고한리 94-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기정	D7	고한읍 고한리 96-57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기정	D8	고한읍 고한리 96-76번지 일원	◦ 차폐조경(B=2m)	

5)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E1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도면 참고
변경			◦ 보차혼용통로(B=4m) ※ 장기미집행 노선변경에 따라 보차혼용통로 일부 조정	
기정	E2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E3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기정	E4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E5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 획지세장비 1:0.5 범위내로 계획 (전면도로 접하는 길이 = 1)	
기정	E6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E7	고한읍 고한리 274-226번지 일원	◦ 공개공지	도면 참고
변경			◦ 공개공지 ※ 장기미집행 노선변경에 따라 보차혼용통로 일부 조정	
기정	E8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 공개공지	

3) 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F1	고한읍 고한리 66-3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공개공지	
기정	F2	고한읍 고한리 65-4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정	F3	고한읍 고한리 65-1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F4	고한읍 고한리 65-10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848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도로:소로1-8호) 공사 완료 공고

정선(여량) 군계획시설(도로:소로1-8)의 개설사업(여량중고 옆)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8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소로1-8호) 사업
 - 나. 명 칭: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소로1-8호) 개설사업(여량중고 옆)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 가. 면 적: $A=1,120.5\text{m}^2$ (L=107m, B=10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정선군수(도시과)
 -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가. 착수일: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일: 2021. 6. 01

정선군 공고 제2021-899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 상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안 제1조, 안 제2조)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학술조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3.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20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관람객 인솔자
14. 폐광지역(군을 포함하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해당 지역을 말한다)주민.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조(「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인사용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생략)</p> <p>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1. <u>국민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u></p> <p>2. <u>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u></p> <p>3. <u>「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 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u></p> <p>4. <u>「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u></p> <p>5. <u>법령에서 무료 관람대상자로</u></p>	<p>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1. <u>국민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u></p> <p>2. <u>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u></p> <p>3. <u>「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u></p> <p>4.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5. <u>「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u></p> <p>6.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u></p>

지정된 사람

- 6. 학술조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7.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 (20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관람객 인솔자
- 8. 폐광지역(군을 포함하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해당 지역을 말한다)주민.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9.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호에 해당하는 사람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2. 학술조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3.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 (20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관람객 인솔자
- 14. 폐광지역(군을 포함하여 태

<p>③ (생 략)</p>	<p><u>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해당 지역을 말한다)주민.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u> <u>1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③ (현행과 같음)</p>
----------------	--

제2조(「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u><신 설></u></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1. (현행과 같음) <u>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인사용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u></p>

- 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정선군 공고 제2021-900호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의무 규정 삭제(안 제1조 ~ 안 제5조)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를 “체결해야” 로 한다.

제2조(「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의 개정)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공증협약을 체결” 을 “체결” 로 한다.

제3조(「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를 “체결하여야” 로 한다.

제4조(「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 을 “체결” 로 한다.

제5조(「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수 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 다)을 <u>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 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u></p> <p>1. ~ 4. (생략) ② (생략)</p>	<p>제23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 ----- ----- ----- <u>체결해야</u> ----- -----.</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제2조(「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탁·수탁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한 요양원을 위탁운영 관리 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 호 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협약 <u>체결하여야 하 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공증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u></p>	<p>제12조(위탁·수탁 협약) ----- ----- ----- ----- <u>체결</u>----- -----.</p>

제3조(「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위탁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센터의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위탁협약 체결) ----- ----- ----- 체결하 여야 ----- -----.

제4조(「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수탁 협약) 제7조에 따른 작업장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위·수탁 협약) ----- ----- ----- 체결----- ----- ----- --.

제5조(「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의 협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	<삭 제>

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1-8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정선군의회의장

1. 추진배경

- 국가보훈대상자의 호국보훈수당 인상 지원을 통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호국보훈수당 인상 지급 (안 제9조)
 - 당초 : 월 15만원 → 변경 : 월 20만원

3. 예고기간 : 2021. 7. 16 ~ 8. 5 (20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 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1-9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정선군의회회장

1. 추진배경

- 참전유공자의 참전공로수당 인상 지원을 통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인상 지급 (안 제4조)
 - 당초 : 월 15만원 → 변경 : 월 20만원

3. 예고기간 : 2021. 7. 16 ~ 8. 5 (20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5만원” 을 “2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하 “참전공로수당”이라 한다)으로 매월 <u>15만원</u> 지급</p> <p>2. ~ 5.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 ----- ----- -----.</p> <p>1. ----- ----- ----- <u>20만원</u> ----</p> <p>2. ~ 5.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

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